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
----------	----

제출년월일 : 1999년9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와, 농지법에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 전체 삭제
- 나. 농지이용실태조사등 농지이용행위 조사 (안 제4조)
- 다. 농지관리위원을 마을총회 등을 거쳐 추천 (안 제6조)
- 라.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안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영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관한 확인
5. 영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위원은 리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영제64조 규정에 의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관리임대차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농지관리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2.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 3. 영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4. 영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 5.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위토,종교단체의 소유농지)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 	<p>제명: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법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영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5. 영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매매 및 구입자금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경영규모 적정화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p> <p>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p> <p>9. 기타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p>	<p><삭제></p> <p>7.(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①가 이장은 군수로부터 법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 위원회를 소집하고 영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p> <p>②~④(생략)</p>	<p>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① 위원은 리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p> <p>②~④(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영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등을 인정하거나, 영제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영제64조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조례개정의 건의)	〈삭제〉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내용은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차료의 상한)	〈삭제〉

관 계 법 령 발 취

- 농지법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지 및 그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 농지법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농지법시행령 제64조(위원의 임기) 법제4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65조(위원의 선임) 법제4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69조(위원회의 기능)①법 제48조제5호에서 "기타농지의 관리
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약에 관한 확인
 3.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